

의안번호	2216358
의 퇴 인	김승원의원
회 답 일	2026.6.4.
추계번호	26D047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340억 2,700만원(연평균 68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함께 추계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고용장려금 지급	6,782	6,780	6,776	6,767	6,922	34,027	6,805

주: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의 추가재정소요를 모두 포함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의6 (고용장려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3조의6 (고용장려금의 지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실시기관과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0조¹⁾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특별채용 비율은 18%²⁾임
 - 법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등의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9]에 따라 업종별 보훈대상자 특별채용비율은 3~8%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의거 10% 이상임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비율」(국가보훈부 고시 제2025-6호) 제3조

-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³⁾하고 있어, 추계에서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함께 추계함
 -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동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등 7개 법률안임¹⁰⁾
- 개정안은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의무고용비율 초과인원 및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이 가정함
 - 의무고용비율 초과인원은 2025년 의무고용 초과인원 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에게 고용장려금 지급할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이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추계에서는 이와 같은 업체의 행동변화에 따른 의무고용비율 초과인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중 경증 남성에게 대한 지급단가(2026년 기준 35만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며, 지급기간은 12개월로 가정함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등

4)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1호)

5)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9호)

6)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52호)

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61호)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64호)

9)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60호)

10) 본 추계에서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모두 포함하여 추계하고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실시하지 않음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고용장려금의 지급

-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와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 취업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5년 기준 의무고용해야 하는 법정 취업지원인원은 224,017명인데 비해, 실제 취업지원인원은 76,900명으로 이행률은 34.3%임
 - 국가기관의 이행률이 61.4%로 가장 높고, 기업체 33.3%, 사립학교 29.4%임

[표 2] 취업지원 현황

(단위: 개, 명, %)

		2021	2022	2023	2024	2025
기관·업체수	합 계	15,224	17,241	16,269	16,296	16,004
	국가기관	919	925	588	582	575
	기업체	13,137	15,053	14,424	14,461	14,161
	사립학교	1,168	1,263	1,257	1,253	1,268
법정인원	합 계	199,816	221,502	221,618	222,555	224,017
	국가기관	8,014	8,343	8,907	8,845	8,715
	기업체	186,807	207,884	207,492	208,509	209,988
	사립학교	4,995	5,275	5,219	5,201	5,314
취업지원 인원	합 계	82,778	81,034	80,133	78,207	76,900
	국가기관	5,204	5,314	5,563	5,293	5,350
	기업체	75,766	73,969	72,911	71,306	69,986
	사립학교	1,808	1,751	1,659	1,608	1,564
법정취업지원 이행률	합 계	41.4	36.6	36.2	35.1	34.3
	국가기관	64.9	63.7	62.5	59.8	61.4
	기업체	40.6	35.6	35.1	34.2	33.3
	사립학교	36.2	33.2	31.8	30.9	29.4

자료: 국가보훈부

- (의무고용 초과인원) 2025년 의무고용 초과인원 수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최근 5년간 의무고용 초과인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의무고용 초과인원 현황

(단위: 명, 개)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의무고용 초과인원	1,852	1,633	1,758	1,581	1,659	-2.7
초과기업수	615	563	527	536	512	-4.5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 의무고용 초과인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기간의 의무고용 초과인원은 아래표와 같음

[표 4] 의무고용 초과인원 추정

(단위: 명, 개)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증가율
의무고용 초과인원	1,570	1,527	1,486	1,446	1,407	-2.7

자료: 국가보훈부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중 경증 남성에 대한 지급단가(2026년 기준 35만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함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지급금

(단위: 천원, %)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증가율
경증남성	300	350	350	350	350	3.9
경증여성	450	500	500	500	500	2.7
중증남성	600	700	700	700	700	3.9
중증여성	800	900	900	900	900	3.0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 기준 경증 남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기간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아래표와 같음

[표 6] 고용장려금 월지급금 추정

(단위: 명, 개)

	2027	2028	2029	2030	2031	연평균증가율
고용장려금 월 지급금	360	370	380	390	410	3.9

주: 천원단위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추계결과) 의무고용 초과인원과 고용장려금 월 지급금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의무고용 초과인원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의무고용 초과인원	1,570	1,527	1,486	1,446	1,407	-
월 지급금	360	370	380	390	410	-
추가재정소요	6,782	6,780	6,776	6,767	6,922	34,0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340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함께 추계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고용장려금 지급	6,782	6,780	6,776	6,767	6,922	34,027

주: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의 추가재정소요를 모두 포함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에서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의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함께 추계한 결과임
-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은 최근 의무고용 초과인원을 고려하고 월지급액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중 경증 남성에 대한 지급단가(2026년 기준 35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기간은 12개월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